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5. 11.

社會建設委員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21호로 2020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일주차권 삭제 및 시간주차요금 상한 신설

(안 별표 1의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나. 잠시주차요금 면제 조항 신설(안 별표 1의 비고란 제5호)

다.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 요금할인 조항 신설

(안 별표 1의 비고란 제6호 라목, 마목)

라. 저공해자동차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감면조건인 ‘저공해
자동차 표지’ 삭제(안 별표 1의 비고란 제7호)

마. 승용차요일제 유효기간 신설(안 별표1의 비고란 제12호)

바. 병역명문가 요금할인 조항 신설(안 별표1의 비고란 제19호)

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요금할인 조항 삭제

(안 별표1의 비고란 제25조)

아. 공무수행 차량 등에 대한 요금면제 규정 신설

(안 별표1의 비고란 제28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0. 3. 12. ~ 4. 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노상주차장의 1일주차권 규정 삭제 및 시간주차요금 상한 규정 신설, 공영주차장의 잠시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 서울특별시 및 우리구의 조례 제·개정예 따라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에 대한 요금할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에 따라 공무수행 차량 등에 대한 요금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음.
 - 또한, 승용차요일제 종료(2020. 7. 8.)와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 요금할인 기한 종료(2019.12.31.)로 요금할인 규정을 삭제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시간주차요금 일일상한, 잠시주차 요금 면제 등으로 이용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 권익위 권고사항, 현행 제도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내에서 규정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